

對外 工業所有權 紛爭事例와 通商

對美 通商(的所有權) 紛爭과 Amikacin

I. 對美通商(知的所有權)紛爭

1. 머리말

이 땅 韓半島의 歷史過程을 이어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세계의 모든 나라에 가장 넓게 가장 가까이 열리는 時代를 맞이하고 있다.

올림픽 開催國!

그것이 國家의 名譽와 民族의 自尊心을 象徵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굳이 믿고 싶다.

우리의 크고 작은 것들이 全世界로 紹介되는가하면 어느 사이에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이 소리소문없이 밀려들어 오면서, 우리의 特許法史에도 物質特許導入이라는 커다란 韓·美通商協商의 架橋를 구축하게 되었고, 이제는 유유히 知的所有權의 先進化 또는 담배수입의 自由化라는 새로운 물결이 흐르고 있다.

物質特許의 導入이 우리特許法上의 일부내용을 새로이 追加, 補完한 단순한 사실로 끝나지 않음은 당시 우리의 業界 및 言論에서 憂慮하고 指摘한 바와 같으며, 그 도입 배경이 주로 美國側의 要求에 의한 것임은 이제 周知의 事實이 되었다.

物質特許導入이라는 커다란 架橋構築 이후 미국의 기업들은 쇠고기 廣告市場의 開放, 輸入의 自由化 등 우리의 市場開放을 위한 壓力이 美通商法 301條라는 높은 파도를 타고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어난 본사와 미국의 大企業인 Bristol Myers사와의 Amikacin 特許紛爭의 事例를 紹介하고자 한다.

2. 一般的 背景

특허법은 그 屬性上 自國의 産業發達과 保護側面에서 自國의 이익에 相當하게 制定되어 실시되어 왔으

며, 미국 또는 西方先進國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 예외일 수는 없었다.

1970년대의 高度成長期를 겪으면서 우리의 産業構造도 서서히 변화를 겪게 되었다. 초기의 勞動集約의 산업위주에서 技術集約·자본집약적 산업이 점차 그 비중을 더해 가면서 特許 技術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고, 특히 1974년 1월1일부터 日本人의 특허출원이 국내에서 접수되기 시작한 이후 특허권에 대한 國內外 紛爭이 하나 둘씩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측에서도 1977년 당시 特許局을 特許廳으로 改編, 擴大하였고 國·내외간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제도의 밑바탕으로서 특허제도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1980년 파리조약에 가입하여 특허에 관한한 對外開放原則을 宣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80년대초의 時代的狀況을 살펴보면 1979년의 2차 석유파동과 세계적인 景氣不況의 持續으로 우리나라 산업은 外緣成長에서 內實成長 위주로 성장패턴의 轉換을 꾀하였으며, 이에 따라 重化學工業의 投資조정 등 산업의 구조개편을 추구하는 한편 技術開發과 生産性 向上 등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産業合理化 노력이 집중적으로 경주되고 있었으며, 반도체·컴퓨터·생명공학 및 신소재 산업 등 尖端産業의 開發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었다.

특히 1980년대의 貿易環境은 '50~'60년대의 자유무역질서가 퇴조하고 '70년대의 石油위기를 거치면서 불황에 진입한 세계경제가 長期的 停滯現象을 보여 成長의 鈍化, 失業의 增加, 國際收支 赤字의 累積에 직면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 수입상품에 대한 輸入規制와 함께 상대방 국가의 市場開放要求 및 통상에 있어서의 相互主義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GSP 수혜에 있어 卒業概念의 적용 및 競爭

問題 (1)

Case 중심



洪性夏

(東亞製藥(株) 特許課長)

力充足基準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지적소유권과 연계하여 자국의 이익과 일치시키려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체제의 根幹을 이루고 있는 GATT체제, 즉 關稅引下를 통한 자유무역보장체제와 대립되는 보호주의 정치법률로서 미통상법 301조까지 동원하여 자연스럽게(?) 지적소유권에 관한 通商摩擦의 解決手段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와의 對美通商과 關連한 工業所有權 紛爭의 일반적 배경을 要因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壓縮될 수 있다.

가. 美國의 貿易赤字 增加

1985년 당시 미국의 貿易赤字는 U\$1,700억에 이르고 있었으며, 미행정부는 무역적자에서 오는 財政負擔을 줄이기 위하여 국유지를 매각할 정도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었음.

나. 韓國의 對美輸出 및 貿易黑字의 增加

우리의 만성적인 대미무역적자는 '85년 들어와서야 回復되기 시작하면서 '86년에야 처음으로 U\$50억의 黑字를 기록했고, '87년 U\$99억을 기록했으며, '88년의 경우는 U\$60억 규모의 흑자가 예상된다. 이는 '86년기준 총미국무역적자의 3% 정도에 불과한 것이나 미국은 자신의 무역적자와 관련하여 당시 처음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에 대하여 議會 및 輿論을 동원하여 자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압력을 가해왔음.

다. 韓國의 底力에 對한 警戒

국내의 자동차 산업 및 반도체산업 등 尖端産業의 急成長은 세계 제1이라는 미국내의 尖端腦腦産業의 앞날을 불안케 하였으며 “한국=제2의 일본”이라는 輿論이 제기되게 하였음.

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효과적인

通商壓力 窓口 存在

미국은 우리나라의 對外交易에 있어서 가장 큰 比重



目 次

I. 對美通商(知的所有權) 紛爭

1. 一般的 背景
2. 知的所有權 紛爭의 發達
3. 美國의 對外壓力用 通商制度

II. Amikacin Case

1. 紛爭의 背景 및 發達
2. 紛爭內容 및 經緯
3. 法律外的 紛爭
 - 一. 301條, 305條
4. 東亞—Bristol 협상
5. 現狀況 分析
6. 東亞의 立場
7. 본 Case 에서 얻은 教訓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다음號〉

을 차지하고 있는 最大市場으로서 '80~86년도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중 대미수출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경제의 構造的 弱點에 대하여 미국측은 GSP延長法, 通商法 301조, 關稅法 337조 등을 制度的 壓力窓口로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

마. 韓國의 政策決定慣行의 脆弱性

한·미간의 協商內容 및 進行등에 대하여 정부가 獨斷的으로 이끌어가는 慣行으로 인하여 업계의 充分한 意見反映 및 輿論形成등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었으며, 意思決定機構의 단순성 및 비밀성으로 인하여 한·미통상 현안의 대부분을 一方的으로 讓步하는 실정이었음.

바. 미국의 自尊心 回復意志(Nationalism)

Reagan 美 大統領이 就任하면서 “America is No.1”이라는 Slogan으로 미국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미국의 國家政策은 곧 바로 Nationalism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空洞化된 미국의 尖端産業이 다시 回復되어야 한다는 國民意識을 形成하는 契機가 되었다.

즉, 미국은 이제 世界의 美國이 아닌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의 一個 國家로 轉落되고 말았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와의 交易에서도 “對等”을 要求하기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美國의 법령과 다른 外國의 法습이나 慣行은 모두 “Unfair”한 것이라는 傳家の 寶刀와도 같은 通商法 301條라는 惡法中的 惡法이 誕生

하게 된 것이다.

3. 知的所有權 紛爭의 發達

한국의 醫藥 및 農藥市場에 대한 최대의 原料 및 製品供給源인 미국은 자국의 특허제도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化學物質特許가 認定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국의 제약 및 농약기업의 신개발기술이 韓國의 競爭企業에 의해 模倣되고 있다고 不滿을 품고 있었다.

특히 70년대 후반에 들어 한국의 精密化學工業技術이 獨自의인 工程開發 水準에 이르게 되어 국내기업들이 中견의 原料공급원인 미국기업과 競爭關係에 놓이게 되자 美國의 不滿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국내기업의 새로운 공정개발이 자신들의 특허를 모방한 것이고, 이러한 모방이 가능한 이유가 韓國特許制度上的 未備點으로 인해 造裝되고 있다는 불만적인 의견이 1981년 韓·美 兩國政府間의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동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韓·美商工長官 會議에서 미국측은 물질특허제도의 채택을 公式으로 要講하기에 이르렀다.

이후의 계속되는 미국의 꾸준한 開放壓力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2년 : 韓·美經濟協議會(1월), 한·미통상장관회담(3월) 한·미무역실무회의(10월)

→物質特許導入要求

1983년 : 1次韓·美工業所有權會議(3월)

→물질특허도입 및 지적소유권 보호를 GSP 적용과 연계시켜 요구

1984년 : 미통상관세법 301條 改正(통상법에 의한 報復措置可能)

→교역상대국에서 美國國民의 知的所有權 保護實態 調査報告書를 매년 미의회에 提出토록 함.

1985년 : Reagan 대통령의 301條에 의한 조사지시

→報復措置 示唆

이러한 배경하에서 당시 Reagan 미 대통령이 통상법 301條를 발동(1985. 10. 16) 韓國國內에서 미국인의 지적소유권 保護實態에 관한 調査를 指示하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미국의 開放壓力에 대한 구체적인 協商進行過程 및 관련내용에 대하여 우리의 政府 및 關聯部處는 對國民弘報나 관련기업과의 충분한 意見交換이 거의 없었던 상태였고, 이와 관련한 국내의 輿論形成이 全無한 상태였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과 관련기업이 미국의 要求內容을 거의 몰랐던 탓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Reagan 미 대통령에 의한 통상법 301條 發動과 아울러 報復措置의 가능성에 대한 시사는 對美 偏重의인 수출구조를 갖고있던 국내의 대다수 기업과 국민들에게 상당한 衝擊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것은 당시의 政治的 狀況과 上乘作用을 하여 급작스러운 미국성토 여론등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沉國民의 危機意識과 反美輿論은 당시의 권력구조와 脆弱한 政治基盤에 근거한 획일적인 정책결정기관으로 하여금 여론의 충분한 반영이나 업계의견 검토등의 시간적인 여유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性急한 雰圍氣로 인하여 危機意識을 갖고 대미통상협상에 임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물론 당시 特許廳의 논리적인 對應措置등이 상급의 政策決定機關에서 수정되고 또 特許廳의 發言權이 弱화된 것도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본사의 Amikacin 분쟁은 이러한 분위기, 즉 정부 政策決定機構의 劃一性이나 통상법 301條 발동에 대한 危機感이 高潮되어 있을때에 시작되었으며, 당시로서 본사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우리가 정당하다는 信念이 되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特許廳, 法院, USTR의 301條 발동등에 나름대로 最善을 다하여 결과적인 승리를 갖게 된 것이라 하겠다.

Reagan 미 대통령의 301條 發動措置는 그야말로 韓·美通商協商타결(1986. 7. 21)에 있어서 도깨비 방망이였다.

미국의 요구대로 物質特許導入과 함께 특허법의 즉각적인 개정, 제류중인 制법특허의 물질특허로의 補正, 未市販物質의 保護(Pipeline Product)등이 어렵지 않게 타결되고, 국회에서는 1986년 12월 某國會議員이 눈물을 흘리며 反對함에도 불구하고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이 국내산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국민의 代表機關으로서의 검토과정이 없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물론 Pipeline Product 保護등에 대한 한·미간의 협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그 基本的인 價格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우기 한·미 지적소유권 협정에 따른 美國人의 破擊的인 優待措置로 인하여 EC제국 및 일본과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通商摩擦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EC諸國은 한국에 대한 GSP 供與中斷등 通商報復措置를 취해오고 있는 것이다.

본사의 Amikacin 특허분쟁이 美國側의 通商壓力初 期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 이제 본 紛爭을 마무리 짓

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對美通商協商妥決의 과정과 일치되는 점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본사의 特許紛爭 過程 및 그 內容은 국내 모든기업에게도 反復될 수 있는 紛爭事例였다는 점도 부연코자 한다.

4. 美國의 對外 壓力用 通商制度

A. 通商法 301條

1) 內容 : 1974년 제정된 通商法 제301조에 의거 大統領에게 미국의 통상에 負擔을 주는 不當하고 不合理한 外國政府의 慣行에 對항할 수 있도록 輸入制限措置를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權限을 부여.

2) 適用對象 : 국가의 政策·制度 및 貿易協定違反등 (미국의 통상에 대한 制限 또는 差別등이 포함됨).

3) 處理節次 : 대통령의 指示 또는 利害當事者가 貿易代表部(USTR)에 請願을 하면,

가. USTR은 청원후 45일 이내에 調査開始의 여부를 결정

나.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관련 국가에 協商을 要求

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公式의 紛爭解決節次” 진행

라. 總 12個月 이내에 조사 절차를 終決하고 大統領에게 報告, 建議

마. 대통령은 건의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취할 措置를 決定, 公示.

4) 報復措置 : 關稅, 輸入規制.

5) 對韓國 發動威脅事例

- 韓·美知的所有權協定(물질특허, 미생물특허, 저작권, Budapest조약)

- 保險市場開放
- 담배市場開放
- 쇠고기輸入自由化
- 포도주輸入自由化
- Bristol Myers(동아제약 AMIKACIN)
- Squibb (보령제약 CAPTOPRIL)

B. 通商法 305條

미국의 通商關係(貿易政策 및 慣行, 知的所有權制度 포함)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USTR은 關聯資料(비밀로 취급되는 자료제외)를 조사하여 該當人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交易相對國에 대한 強制力은 없음.

C. 關稅法 337條

1) 內容 : 1922년에 제정된 關稅법(Tariff Act)제 316조로 처음 制定된 不公正輸入行爲에 대한 法條項이 1930년 關稅법 337條로 再立法.

不正競爭方法으로 국내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성있게 운영되고 있는 분야의 産業을 破壞하거나 相當한 害를 끼치거나 抑制·獨占 또는 이와같은 憂慮가 있는 不公正 行爲를 불법으로 규정함.

2) 適用對象 : 불공정행위의 範圍는 特許·商標에 대한 權利侵害, 獨占禁止法 違反, 虛偽產地表示, 貿易秘密盜用, 責任轉嫁, 虛偽廣告등 광범위함.

3) Case : 삼성반도체등(表 1 참조)

D. 其他

- 1) GSP : 현재 대부분의 國內商品은 GSP 卒業
- 2) GATT(Uruguay Round) : 포도주 撤消
- 3) 綜合貿易法案(表 2 참조)

(表 1) 特許權侵害를 理由로 한 ITC提訴 事例(關稅法 337條·關聯, 韓國)

國 名	關聯會社 및 品名	經 過 措 置
美 國 (Perter Chang)	(부성산업) Caulking Gun	· 83. 1. 26 韓國產 코깅건 特許權 侵害 提訴 · 83. 4. 5~6. 30 ITC 聽開會 및 資料 要請, 我側 答辯書 提出 · 84. 2. 29 ITC 救濟 勸告案提出(General Exclusion order) · 84. 4. 29 大統領 ITC 決定承認(GSP 撤回)
美 國 (Minigrip 社)	(昌原化學工業社) Reclosable Plastic Bags	· 87. 3. 23 業界提訴 · 87. 4. 21~88. 4. 29 ITC 調査 및 最終輸入 排除命令 發表豫定 ※ 大統領의 棄却時限(2個月) 經過
美 國 (Intel 社)	(現代電子) Erasable Programmable	· 87. 8. 5 業界提訴 · 87. 9. 3 ITC 調査開始

■ KIPA特講 ■

	Read Only Memory	· 87. 10. 8 ITC 調査期限 延長
美 國 (KERO-Sun社)	(신양전기, 한국후지카, 국제전광사) Kerosene Heater	· 83. 3. 11 提訴 · 83. 5. 3 提訴者側 訴 取下로 終結
美 國 (Revere社)	(韓國) Stainless Steel Flatware	· 83. 2. 4 金屬製 洋食器의 디자인 盜用을 통한 偽造商 品 販賣與否 提訴 · 83. 3. 3 ITC 調査開始 · 83. 5. 10 辯護士 雇傭 契約締結 · 83. 7. 20 ITC 및 提訴者와 事前 協商을 爲한 業界代 表團 訪美 · 83. 8. 4 被訴側과 提訴側 訴取下 合議 · 83. 8. 31 ITC 提訴 取下 承認
美 國 (Hartman Luggage Co.)	(豊國産業) Attache Cases Hangerbag Carry-on bag	· 86. 2. 11 商標權 被害 및 製品 이미지損傷 提訴 · 86. 3. 14 ITC 委員 3:3可否 同數 表決로 調査開始 決定 · 86. 12. 18 當事者間 和解 成立으로 調査終結
美 國 (Wayne Silva)	(金星社, 三星電子) 電子오븐용 타이어	· 87. 2. 10 提訴 · 87. 3. 11 ICT 調査請願 却下
美 國 (Texae Instruments Inc.)	(三星半導體通信, 三星物産) DRAM 칩, Certain DRAMS & Components	· 86. 1. 24 ITC에 不正去來 提訴 · 86. 3. 11~9. 21 ITC 調査 및 最終判定豫定(被害肯 定, 通關排除命令) · 86. 11. 12 TI社와 和解協定 · 86. 12. 3 大統領 ITC 救濟命令일부 거부 · 86. 12. 16 ITC 輸入排除命令 수정발표 ※ 救濟措置: 輸入 및 販輸禁止
美 國 (David Leinoff 社)	(진 도) 毛皮코트 및 加工毛皮	· 86. 11. 10 美國에 輸出되는 일부 Feathered Coats 製造時 David Leinoff 所有의 Pelts 加工特許侵害를 提 訴 · 86. 2. 10 ITC 調査開始 · 87. 7. 28 ITC 兩社和解協定
美 國 (DennisonMfg Co.)	(대원화학, 경원실업, 대산정밀, 진성통상 等 12個社) Plastic Fastener	· 86. 5. 12 美業界 提訴 · 86. 6. 17 ITC 調査開始 · 87. 5. 18 調査期限 延長 · 87. 12. ITC 侵害否定判定 ※ 美國內 被訴側이 辯護士 活用對應 — 韓國은 資料協助
美 國 (Continetal American 社)	(유창기업) Metallic Balloon	· 87. 6. 23 業界提訴 · 87. 7. 27 調査開始 · 88. 1. 12 訴取下로 終結
美 國 (Motorola社)	(現代電子) Cellular Mobile Telephone	· 87. 7. 9 業界提訴 · 87. 8. 5 ITC 調査開始 · 88. 2. 8 和解協定으로 終結

***2 綜合貿易法案**

I. 沿革

- 一. 86. 1월; 美議會에서 舉論되기 시작
- 一. 87. 2월; 벤스 上院 財務委員長을 중심으로 상원안 舉論
- 一. 87. 5월; 下院 자체 綜合貿易法案 上程
- 一. 87. 7. 22 上院; 백여개의 각종 修正案을 흡수하여 버드, 둘 修正案 確定시킴(下院案보다 緩和된 것임)
- 一. 87. 7. 30 下院; 게파트 修正案採擇(30億弗이상)

- 對美黑字國 단계적으로 黑字幅(10%) 縮小 強行條項)
정부측 綜合貿易法案 否決됨
- 一. 87. 9월; 美議會 통상 一括調整會議에서審議
 - 一. 88. 3월; 정부측과 折衷하여 게파트 修正案削除
 - 一. 88. 5월; 미大統領 拒否權行事(工場폐쇄조항과 알래스카산 石油輸出 規除조항)
 - 一. 88. 7월; 美議會, 위 舉否權행사의 이유였던 條項을 削除한 修正案 再成立
 - 一. 88. 7. 13; 下院, 表決(통과)
 - 一. 88. 8월; 上院, 表決(통과전망)
(大統領 承認與否)

(表 2) 美의 新·舊 通商法の 주요내용 備較

現 在	追 加	備 較
<p>1. 不公正貿易貫行(301條)</p> <p>一. 大統領이 發動</p> <p>一. 貿易協政規定과 불일치하거나 협정에 따라 惠澤拒否 또는 “否當”하거나 “不合理”하거나 “着別的”이고 미의 통상에 負擔이 되거나 制限하는 法, 政策 또는 貫行을 대상</p>	<p>一. USTR(통상대표부)로 移管</p> <p>一. 持續的貿易歪曲貫行 調査로 관행이 없을 경우 미수출증가 豫想規模等 議會報告</p> <p>一. 同時에 301條 調査, 協商突入</p> <p>一. 일정기간동안 시정치 않을 시 報復措置</p> <p>一. 勞動權의 侵害, 特定產業育成 策과 反競爭의 貫行 포함시킴.</p>	<p>一. 制裁節次 簡素化</p> <p>一. 大統領, 議會連繫</p>
<p>2. 換率制裁條項</p> <p>一. 財務長官의 外換市場 介入權 限만 있고 義務는 없음</p>	<p>一. 對美黑字國이며 全體貿易收支 黑字國증 換率造作協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個別換率協商 追進하여 매년 10.15까지 의회 보고하여야</p>	<p>一. 範圍擴大</p> <p>一. 低賃金國도 對象</p> <p>* 議會報告內容</p> <p>一. 교역 활동시장분석</p> <p>一. 換率市場 변동요인</p> <p>一. 달러價值 影響分析</p> <p>一. 換率協商結果</p>
<p>3. 關稅法 337조(知的所有權)</p> <p>一. 미 ITC(國際貿易委員會)에서 輸入에 의한 미업자의 피해가 認定된 경우에만 해당상품의 수입금지</p>	<p>一. 被害立證없이 特許侵害商品의 대미 輸入規制 可能하게</p>	<p>一. 해적행위하는 국가에 대한 措置 強化</p> <p>一. 被害要求基準 緩和</p> <p>一. 無被害立證責任을 輸出國에 부담지움(提訴頻發 可能成)</p>
<p>4. 緊急救濟(201-203條)</p> <p>一. 制裁措置; 關稅賦課 또는 引上</p> <p>* 1</p> <p>一. 關稅쿼타</p> <p>一. 수입에 의한 數量制限</p>		<p>一. 制裁措置 強化</p>

■ KIPA特講 ■

一. 市場秩序維持協定

一. 반덤핑 相計關稅 등 提訴가 결
린 다음의 무더기 輸出規制

* 2

- 一. 競賣쿼터제 (Auction Quota)
- 一. 산업조정기금(0.15%의 수입
과징금 부과)

* 1. 關稅 Quota(관세 할당) : 輸出物量의 과도한 증
가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기간내에 수출되는
특정물품에 대해 制當量까지는 低稅率(無稅)
을 適用하고 그것을 超過하는 것에는 高稅率
을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

* 2. 競賣쿼터제 : 미국내 수입업자들에 대한 輸入
物量制限으로 인한 競賣가 이루어지는 제도.
ex) 수입 Quota → Auction → 費用 및 單價上乘
→ 輸入抑制效果

<계 속>

(案) 特許廳 複寫業務 代行 (內)

本會에서는 對民서어비스業務를 擴大하여 會員을 비롯한 資料利用者에 對한 便
宜를 提供하고 效率的인 業務遂行을 하고자 特許廳 閱覽室의 特許文獻 複寫業務
를 代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同 複寫手數料 徵收方法을 아래와 같이 變更 實施하오니 業務에 參考하
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手數料徵收方法 : 現金收納(수입인지는 받지 않습니다)

◎ 金 額 : 枚當 100원(從前과 同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研修部 (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

(안) 발명진흥회 가입 (내)

발명인 상호간의 긴밀한 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하여 우수발명창출을 유도하고 발명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발명진흥사업을 전개함에 있음.

사업내용

- 1) 公業소유권에 관한 새로운 정보제공
- 2) 회지(발명특허), KIPA통신 등 자료제공
- 3) 발명진흥에 대한 건의
- 4) 발명진흥사업안내
- 5) 회원 상호간의 협조증진 및 분쟁조정
- 6) 기타 발명 활동 지원

회원자격

公業소유권 출원 및 등록을 하였거나 발명에 관심이 있는 개인으로서 본회에 소정의 신청서
를 제출하고 연회비(2만원)를 납부한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발명진흥부(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